

3. 建設業法施行規則中 改正令

建設交通部令 第7號 1995. 2. 14

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1호 본문중 “개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증명서”를 “명단”으로 하며, 동항 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영 별표 4에 의한 건설업 면허 기준상 사무실·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8. 신청인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보유현황표 및 당해 기술인력의 국가 기술자격증 사본

제3조의2 제1항 제3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중 “제1항 각호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외국인의 건설업면허신청시의 기재사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명칭)과 그가 출자한 금액 및 출자비율을 제3조 제1항의 건설업면허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2.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인의 자본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법인

제4조 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갱신 신청서에는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

6호·제8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임원이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면허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영 제54조 제1항 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장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건설업면허 특례절차)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식재사업실행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영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제5조·제6조·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건설업면허내용의 게시) 건설업자는 영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주된 영업소안에 건설업면허증을 내걸어야 한다.

제12조 제2항의 표의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란의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임원의 변경란을 삭제한다.

2.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등본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제1항중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소분류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을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종류별”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별표 3”을 “별표 1”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영업양도의 경우”를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를 하는 경우”로, “5배(개인의 경우에는 2.5배)”를 “10배(개인의 경우에는 5배)”로, “영 제26조 제1항”을 “영 제26조”로 한다.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 제6호중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현황표(전문건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를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7호 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와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 사본

3. 자기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한 관청이 확인한 별지 제17호 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인·허가내용에 건설공사비내역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 인·허가관청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각 협회가 발행한 별지 제17호 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7. 영 제10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의 변동사항과 해당 임원에 관하여 제3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서류. 다만, 당해 임원이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의2 제1항 본문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5억원”을 “7억원”으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3(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중 하도급대

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가. 하수급인 수급인이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2호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중 공사에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한 경우

가. 발주자는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통지르 받았거나 동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서면승낙을 받은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지할 것.

②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건설공사 표지) ①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내걸어야 할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중 준설공사·

수중공사·유지보수공사 기타 성질상 표지판을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석재·금속 등으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공사기간
2. 발주자의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
3.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서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6. 현장감독자(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에 한한다)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과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8. 준공검사자의 성명(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직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중 “영 제47조 제1항”을 “법 제41조 제5항”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보고서식) ①영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면허현황의 보고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신고사항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본문·제6조본문·제9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여 [별표 1]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5

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건설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서식에 불구하고 면허의 갱신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일반건설업자및특수건설업자의도급한도액 평가방법(제17조 제2항관련)

1.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의 산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text{도급한도액} = \text{공사실적평가액} + \text{경영평가액} + \text{기술개발평가액} \pm \text{상벌평가액}$$

가. 위의 산식에 의한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 (1)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으로 한다.
- (2)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도급한도액기준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도급한도액기준금으로 한다. 다만,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면허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10배(이하 “기준자본금”이라 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3)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도급한도액기준금 보다 적더라도 기준자본금 보다 큰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으로 한다.

(4) (2)·(3) 및 나목중 도급한도액 기준금이라 함은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다만,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외의 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에 건설업부문의 매출액이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건설업면허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을 말한다.

나. 위의 산식에 의한 경영평가액은 도급한도액기준금에 경영평점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경영평가액은 가목의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나목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text{경영평점} = (\text{유동비율평점} + \text{부채비율평점} + \text{매출액순이익율평점} + \text{총자본회전율평점}) \div 4$

(1) 위의 산식에 의한 유동비율평점, 부채비율평점, 매출액순이익율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매출액순이익율(법인세차감전순이익/매출액),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업계전체평균 비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점을 초과할 때에는 각각의 평점을 3으로 하며, 부채비율평점 또는 매출액순이익율평점이 0 이하인 경우 각각 그 평점을 "0"으로 한다.

(2) (1)중 각각의 업계전체평균비율은 업체(부채비율 또는 매출액순이익율이 0이하인 업체를 제외한다)의 전체평균비율에서 2배의 표준편차를 초과한 비율의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전체평균비율을 말한다.

(3) 경영평점이 2를 초과할 때에는 2로, 0이하일 때에는 0으로 한다.

라. 위의 산식에 의한 기술개발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으로서 실제로 사용된 금액이 매출액에서 차

지하는 비율에 따라 사용된 금액의 다음에 해당하는 배수의 금액으로 한다.

(가) 1퍼센트미만인 경우 : 7배

(나) 2퍼센트미만인 경우 : 8배

(다) 3퍼센트미만인 경우 : 9배

(라) 3퍼센트이상인 경우 : 10배

(2) (1)에 의한 기술개발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그 초과되는 금액은 다음 연도의 기술개발평가액에 더한다. 다만, 2이상의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기술개발평가액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도급한도액 산정시 합산한 기술개발평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다음 연도의 기술개발평가액에 더한다.

마. 위의 산식에 의한 상벌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1) 직전 영업연도에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2) 직전 영업연도에 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5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

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6조 제4호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급한도액 감액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 영업연도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하 “기준재해율”이라 한다)의 1배이상 2배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는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3, 기준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는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면허를 하는 경우 그 면허를 받는 건설업자의 당해 연도 도급한도액 및 다음 연도 도급한도액을 산정하거나 건설공사실적신고기준일 이후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를 받은 경우 그 건설업을 양수한 자의 다음 연도 도급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1호 “다”의 경영평점을 1로 한다.

3. 일반건설업면허 또는 특수건설업면허를 점을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2이상 소지한 건설업자의 각 면허별 도 <별지서식 생략>
 급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경영평

◇개정이유◇

건설업법(1994. 1. 7, 법률 제4,724호) 및 동법시행령(1994. 8. 23, 대통령령 제14,366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설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건설업체가 국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기타 건설업에 대한 규제중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건설업면허 및 갱신신청, 건설업자의 변동사항 신고시 첨부하도록하던 신원증명서 등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제3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
- 나.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도급공사 및 자기공사의 기성실적 증명방법을 개선함(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
- 다.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을 독촉한 후 수급인이 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요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독촉절차를 없애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정가격의 85퍼센트미만의 금액으로 도급받은 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함(제21조의3).
- 라. 건설공사에 의하여 완성된 시설물에는 석재·금속 기타재료로 표지판을 제작하여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되, 표지판에는 당해 공사명·공사기간·발주자·설계자·감리원 및 현장감독자의 성명,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현장기술자와 준공검사자의 성명을 명기하도록 함(제22조). <건설교통부 제공>